

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간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 명칭 변경(안 제3조)

나. 직제순 변경

- 미디어홍보담당관 → 미디어홍보과(안 제5조의2)
- 국 직제순 변경(안 제5조~제8조)

다. 부서 신설

- 주거정비과 신설(안 제5조)
- 일자리지원과 신설(안 제6조)
- 스마트혁신과 신설(안 제9조)

라. 부서 통·폐합

- 어르신지원과 + 고령사회정책과 → 어르신복지과(안 제7조)
- 여가도시과 + 여가생활과 → 여가관광과(안 제10조)

마. 부서 명칭 변경(안 제5조, 안 제8조~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1) 부패영향평가 : 제외대상
- 2)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
- 3) 규제사전심사 : 대상아님
- 4)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: 대상아님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대상

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문화도시행정국, 기획재정국, 주민복지국, 미래교육국, 도시계획국, 안전교통건설국, 힐링도시국”을 “도시계획국, 문화행정국, 기획경제국, 복지돌봄국, 미래교육국, 안전교통국, 정원여가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감사담당관, 미디어홍보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5조,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제5조의2, 제8조 및 제5조로 한다.

제5조의2(종전의 제5조)의 제목 “(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문화행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”을 “문화행정국”으로, “문화도시과, 체육도시과”를 “미디어홍보과, 문화과, 체육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및 민방위교육에”를 “등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,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제4호,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및 관광에”를 “등에”로 한다.

3. 홍보종합계획 수립, 언론매체 활용 홍보, 구소식지 제작·발행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기획경제국에 두는 과)”로

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재무과”를 “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재무과, 일자리지원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·조정, 예산”을 “기획, 예산, 성과평가 및 대외평가, 공모사업 관리”로, “통계 및 정책개발”을 “통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진흥, 일자리 창출·지원”을 “진흥”으로 한다.

3. 일자리종합계획 수립, 일자리 창출·지원, 공공일자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5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재건축사업과”를 “재건축신속추진과, 주거정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재건축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·변경에 관한 사항

3. 주택재개발정비사업,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주민복지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복지돌봄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주민복지국”을 “복지돌봄국”으로, “어르신지원과”를 “어르신복지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민복지국장”을 “복지돌봄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복지시설 및

지원”을 “복지시설, 고령화 대책 및 지원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(중전의 제7조의2)제1항 중 “청년정책과, 고령사회정책과”를 “청년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문교육 및 평생교육”을 “전문교육, 평생교육 및 도서관 조성·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안전교통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도시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”를 “안전교통국에 안전관리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스마트혁신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재난예방·복구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”을 “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, 민방위교육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스마트도시 사업, AI 종합계획 수립 및 AI 기반 행정혁신, 데이터 기반 행정, 정보화 사업 및 전산자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 제목 “(힐링도시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정원여가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힐링도시국에 푸른도시과, 정원도시과, 여가도시과, 여가생활과”를 “정원여가국에 푸른공원과, 정원조경과, 여가관광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힐링도시국장”을 “정원여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여가시설운영”을 “관광정책 수립·지역기반 관광 및 여가시설 운영”으로, “운영에”를 “운영,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탄소중립도시과”를 “탄소중립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4호, 제4조제1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,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, “미디어홍보담당관”을 “미디어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, “기획재정국장”, “미디어홍보담당관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, “기획경제국장”, “미디어홍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안전교통국장”으로 같은 조 제

3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 및 힐링도시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 및 정원여가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“문화도시행정국장, 주민복지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복지돌봄국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주민복지국장, 도시계획국장, 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복지돌봄국장, 도시계획국장, 안전교통국장”으로, 제10조제8항 및 제13조제2항 중 “생활건강과장”을 “생활보건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주민복지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, 복지돌봄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·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문화도시행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⑲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재정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⑳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㉑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㉒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㉓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·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·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㉕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㉖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주민복지국장”을 “문화행정국장, 복지돌봄국장”으로 한다.

㉗ 서울특별시 노원구交通安全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, 제4항제1호 중 “푸른도시과장”을 “푸른공원과장”으로 한다.

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, “안전도시과장”을 “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한다.

㉕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, 제21조제3항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㉖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㉗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안전교통건설국장”을 “안전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㉘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힐링도시국장”을 “정원여가국장”으로 한다.

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힐링도시국장”을 “정원여가국장”으로 한다.

㉚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힐링도시국장”을 “정원여가국장”으로 “푸른도시과장”을 “푸른공원과장”으로 “여가도시과장”을 “여가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㉞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2호 중 “문화도시행정국”, “기획재정국”을 “문화행정국”, “기획경제국”으로 하고, 나목은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주민복지국”을 “복지돌봄국”으로 하고, 제4호 “안전교통건설국”, “힐링도시국”을 “안전교통국”, “정원여가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문화도시행정국, 기획재정국, 주민복지국, 미래교육국, 도시계획국, 안전교통건설국, 힐링도시국</u> 및 <u>탄소중립국</u> 을 둔다.	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위하여 <u>도시계획국, 문화행정국, 기획경제국, 복지돌봄국, 미래교육국, 안전교통국, 정원여가국</u> ----- -----.
제4조(담당관 및 단의 설치) 부구청장 직속으로 <u>감사담당관, 미디어홍보담당관</u> 을 둔다.	제4조(담당관 및 단의 설치) ---- ----- <u>감사담당관</u> ----- -----.
제5조(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) ① <u>문화도시행정국</u> 에 행정지원과, 자치행정과, <u>문화도시과, 체육도시과</u> 및 <u>민원여권과</u> 를 둔다. ② <u>문화도시행정국장</u>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략) 2. 동행정지도,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,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<u>민방위교육</u> 에 관한 사항 <u><신설></u>	제5조의2(문화행정국에 두는 과) ① <u>문화행정국</u> ----- ----- <u>미디어홍보과, 문화과, 체육과</u> ----- -----. ② <u>문화행정국장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 <u>등에</u> ----- - 3. <u>홍보종합계획 수립, 언론매체 활용 홍보, 구소식지 제작·발행에 관한 사항</u>

3. 문화예술 정책·공연, 축제
및 관광에 관한 사항

4. (생략)

5.·6. 삭제

7. (생략)

제6조(기획재정국에 두는 과) ①

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재무
과, 지역경제과, 징수과, 재산세
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.

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구정의 기획·조정, 예산, 법
제심사, 소송, 통계 및 정책개
발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<신설>

3. 지역경제 진흥, 일자리 창출
· 지원, 사회적기업 육성·지
원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

4.·5. (생략)

6. (생략)

7.·8. 삭제

4. -----
-- 등에 -----

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5.·6. (현행과 같음)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6조(기획경제국에 두는 과) ①

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재무
과, 일자리지원과-----
-----.

② 기획경제국장-----
-----.

1. ----- 기획, 예산, 성과평가
및 대외평가, 공모사업 관리-
----- 통계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일자리종합계획 수립, 일자리
창출·지원, 공공일자리 운영
등에 관한 사항

4. -----
-- 진흥---

5.·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
같음)

9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7.·8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주민복지국에 두는 과) ①

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, 생활
복지과, 어르신지원과, 장애인
복지과 및 통합돌봄과를 둔다.

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어르신 친화도시, 어르신 복
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5. ~ 9. (생 략)

제7조의2(미래교육국에 두는 과)

① 미래교육국에 미래교육과,
보육가족과, 아동청소년과, 청
년정책과, 고령사회정책과를 둔
다.

②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교육정책, 학교지원, 전문교
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
2. ~ 4. (생 략)

5. 고령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
사항

제8조(도시계획국에 두는 과) ①

도시계획국에 공동주택지원과,

제7조(복지돌봄국에 두는 과) ①

복지돌봄국-----

----- 어르신복지과-----

-----.

② 복지돌봄국장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복
지시설, 고령화 대책 및 지원
등-----

5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미래교육국에 두는 과) ①

----- 청년
과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전문교육,
평생교육 및 도서관 조성·운
영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5조(도시계획국에 두는 과) ①

재건축사업과, 도시관리과, 건축과, 미래도시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.

②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(생 략)

2. 도시재생·재정비 및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<신 설>

3. (생 략)

4. (생 략)

5. 삭 제

6.·7. (생 략)

제9조(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)

① 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도시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.

②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안전관리, 재난예방·복구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

2.·3. (생 략)

<신 설>

재건축신속추진과, 주거정비과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재건축 정비사업 및 정비구역 지정·변경에 관한 사항

3. 주택재개발정비사업,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7.·8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

제9조(안전교통국에 두는 과) ①

안전교통국에 안전관리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스마트혁신과-----.

② 안전교통국장-----
-----.

1. ----- 재난·재해 예방 및 복구지원, 민방위교육 등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스마트도시 사업, AI 종합계획 수립 및 AI 기반 행정혁신, 데

4.·5. (생략) 제10조(힐링도시국에 두는 과) ① 힐링도시국에 푸른도시과, 정원도시과, 여가도시과, 여가생활과 및 도시경관과를 둔다. ② 힐링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·2. (생략) 3. 여가시설운영, 철도문화공원 운영관리, 모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. 여가생활지원, 도서관 운영,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제10조의2(탄소중립국에 두는 과) ① 탄소중립국에 탄소중립도시과, 녹색환경과, 자원순환과를 둔다. ② (생략)	<u>이터기반 행정, 정보화 사업 및 전산자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u> 5.·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 제10조(정원여가국에 두는 과) ① 정원여가국에 푸른공원과, 정원조경과, 여가관광과----- -----. ② 정원여가국장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관광정책 수립·지역기반 관광 및 여가시설 운영----- ----- 운영,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----- -- <삭 제> 5. (현행과 같음) 제10조의2(탄소중립국에 두는 과) ① ----- 탄소중립과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<관계법령>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